

보도시점

2024. 4. 3.(수) 14:00

배포 2024. 4. 1.(월)

## 중소기업 화학안전 모범사례 만든다…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 환경부·중소기업중앙회·3개 업종 조합 및 협회, 중소기업 화학안전 모범사례 창출을 위한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사업’ 업무협약 체결
- 올해 표면처리, 페인트 등 3개 업종 중소기업에 화학사고 예방사업 집중 지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와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사업’ 업무협약을 4월 3일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현철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회장, 조성기 한국페인트 잉크공업 협동조합 전무이사가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학안전과 관련해 △설비 교체·개선 비용 보조, △취급시설 설치검사 기술지원, △제도교육 등 7가지 종류의 사업을 ‘한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여 화학안전 관리 모범사례인 화학안전 등대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다. 올해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페인트·잉크업, 표면처리업, 금속재자원업 등 총 3개 업종에서 모집·선정한다.

\* 어두운 밤에 등대가 불빛을 비춰 배를 안내하는 것처럼 동종업계 사업장의 화학안전을 이끄는 선도 사업장이라는 의미

이번 협약에 참여한 3개 업종 조합·협회는 이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화학안전 지원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며, 향후 화학안전 등대 사업장의 홍보와 우수사례 확산에 동참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별 화학안전 등대 사업장 조성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에서도 화학안전 및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 등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 이후 모집·선정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기술지원,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한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여 화학안전 관리 모범사례로 만들 것”이라면서, “향후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사업 개요.

2.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시범사업 업무협약서. 끝.

|       |              |     |     |                    |
|-------|--------------|-----|-----|--------------------|
| 담당 부서 | 환경부<br>화학안전과 | 책임자 | 과 장 | 정경화 (044-201-6831) |
|       |              | 담당자 | 서기관 | 지용상 (044-201-6843) |



## 붙임 1

##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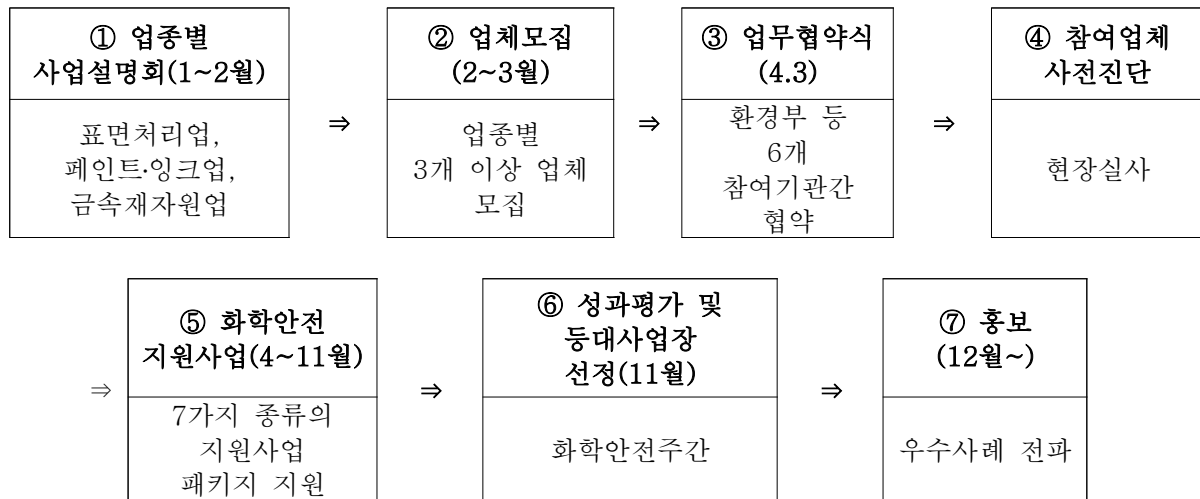
□ (목적) 업종별 화학안전 등대사업장\*을 조성하여 동종 업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우수사례 창출 및 전파

\* 등대가 배를 안내하는 것처럼 동종 업체의 화학안전을 이끄는 선도 사업장

□ (대상업체) 표면처리업, 페인트·잉크업, 금속재자원업 등 업종별로 업체 선정(3개 이상)

□ (사업절차) 업무협약식(4월초) 후 사업시행, 성과평가 및 홍보 추진

### < 사업절차 >



### < 참여기관별 역할 >

| 환경부                                                                                                            | 중소기업중앙회                                                                                                                           | 3개 업종 조합·협회*                                                                                                                      | 한국환경공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총괄</li> <li>정책, 제도 및 홍보 지원 등</li> <li>화학안전 기술지원 (화학물질안전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학안전 취약업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협조</li> <li>중소기업 화학안전 지원사업 협조</li> <li>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우수사례 홍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대사업장 조성 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li> <li>중소기업 화학안전 지원사업 협조</li> <li>동종업체 우수사례 전파 및 홍보 협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현장, 실적 등 총괄 관리·감독</li> <li>화학안전 설비 교체·개선 비용 지원</li> <li>취급시설 안전관리 컨설팅, 안전교육 등</li> </ul> |

\* ①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②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③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환경부, 중소기업중앙회, 3개 참여 조합·협회 및 한국환경공단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동종 업체의 화학안전을 이끄는 선도 사업장인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호 역할)

협약 당사자는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을 위하여 다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한다.

1. 환경부는 업종별 화학안전 등대사업장이 동종 업체의 화학안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화학물질 안전원은 화학안전 및 배출저감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2. 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별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화학안전 지원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화학안전 취약업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노력한다.
3. 3개 조합·협회는 화학물질 등대사업장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모집 및 화학안전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며, 향후 화학안전 등대사업장의 동종 업체에 대한 홍보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4. 한국환경공단은 화학안전 설비 교체·개선 비용 보조, 취급시설 설치검사 기술지원, 취급시설 관련 제도 교육, 화학안전관리 집중케어 등 중소기업 화학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제3조(비밀 유지 등)

1.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본 협약의 협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유지하도록 만전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에 의한다.

### 제4조(협약 효력)

본 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별도 협의를 통해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를 각자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4월 3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 기 문

환 경 부

장관 한 화 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안 병 옥

한국페인트·잉크

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안 성 철

한국표면처리

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 평 재

한국금속재자원

산업협회

회장 박 현 철